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사유

○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참외농업)과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능력 확대와 사용연한('24년) 만료가 예정된 현 소각장의 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 201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개장하여 비바람에도 걱정 없이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재개장 이후 점포공간 협소, 노점상인에 비해 부족한 노점수로 그동안 시장의 공간 확대를 요구하는 상가의 민원이 많은 상태임

- 따라서 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과 재방문 욕구를 유발하고, 점포 상인은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부지면적 확장과 시설개선이 필요함

○ 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 천연기념물 성밖숲 및 이천과 연계하여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주이미지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와 수륜면 수성리에 서부분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등 북부지역 및 선남면, 용암면 등 남부지역 농업인들은 본소 및 서부지역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 먼저 농업인교육관 건립과 연계하여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초전면으로 이전, 북부 분소를 설치하여 농업인 임대농기계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4.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44-5
- 기　　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처리규모 : 47톤/일
- 소요예산 : 194억원(토지매입비 2억원)

나. 추진계획

- 200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추진(비실마을 일대)
 * 생활폐기물 소각장('09년), 폐부직포 처리시설('17년), 재활용선별장('18년)
- 2019년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적화 협의(환경부)
- 2020년 : 국비신청
- 2021년 ~ 2023년 : 사업착수 및 준공

다.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통한 안정적 폐기물 처리능력 확보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군민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 제공

○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주전통시장 인근 및 주변 지역 일원
- 기　　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규　　모 : 770㎡(아케이드 비가림시설 증설)
- 소요예산 : 30억원(군유지 제외한 601㎡ 부지매입비 10억원)

나. 추진계획

- 2018년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행정절차 이행(투융자 심사 등), 주민설명회 개최
- 2019년 :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선정(중소벤처기업부),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계획, 착공
- 2020년 ~ 2021년 : 사업시행 및 준공, 시설 개방

다. 기대효과

- 시장주차장 기능 회복, 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영 개선
- 주말장터 및 문화시장형 공간 조성

○ 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86-2, 86-3
- 기 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부지면적 : 14,689㎡(매입예정 면적 2,033㎡)
- 소요예산 : 10억원(토지매입 예산액 : 1억원)
- 사업내용 : 수목 식재, 산책로 조성, 생태놀이시설, 편의시설 등

나. 추진계획

- 2018. 9. : 2019년 균특회계 예산편성
- 2019. 1. ~ 2. : 부지매입
- 2019. 3. ~ 2021. 12 : 사업착공 및 준공

다. 기대효과

- 도심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및 내방객에게 청정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 쉼터제공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4
- 기　　간 : 2019년(1년간)
- 부지면적 : 4,064㎡(창고건물 709.7㎡ 포함)
- 소요예산 : 10억원(토지매입 예산액 : 8억원, 건물매입 예산액 : 2억원)
- 사업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나. 추진계획

- 2019. 7 : 부지매입
- 2019. 8. ~ 10 : 물류창고 리모델링
- 2019. 11. ~ 12 : 농기계 이전
- 2020. 1.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개소 및 운영

다. 기대효과

-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등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농작업 편이성 제공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에 기여
-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 및 영농편의 도모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등은 의안 참조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

○ 본 안건은 지난 2010년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사용연한이 2024년에 만료가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주읍 삼산리 비실마을 일원에 부지 9,918㎡(약3,000평)를 2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와 갈수록 심화되는 님비현상을 감안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집적화를 위하여 해당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

○ 본 안건은 시장 주차장 인근 770㎡(약230평)부지에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 증설하기 위한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의 부지 중 601㎡(약180평)를 10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성주시장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장 주차장 1층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을 이전시키고 시장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 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770㎡의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3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군 재정여건과 사업효율성 측면에서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부지 매입 >

○ 본 안건은 이천변 성주읍 대황교차로 인근 부지(대황리 86-2, 86-3) 14,689㎡(약4,440평)에 수목 식재,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을 위한“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한 것으로 부지 중 2,033㎡(약610평)를 1억원에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부권에서 성주읍으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장소이지만 농기계 등을 세워두거나 폐자재 등을 적재하고 있어 도시 경관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 부지를 구입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

○ 본 안건은 현재 2개소(본소, 서부분소)에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확충하기 위해 북부지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전면 대장리 764 일원에 토지 4,064㎡(약1,230평), 건물 709㎡(약210평)을 10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가의 농기계에 대한 지역농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본소 이전으로 인한 성주·선남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정여건상 부지를 구입하여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설 신설에 따른 많은 시설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도 감안하여 아무리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도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중인 역사·문화·체육시설 등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